

< 개정내용 >

- (①) ‘인구감소지역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,
 - ‘지방세 특례’ 및 조례 감면 대상 ‘지방세 감면’ 정의 명확화
 - (②) 신탁의 형태^{*}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감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등 해소하기 위해 감면 신설
 - * (토지신탁) 토지 개발을 위한 신탁이므로 수탁자는 사업시행자 지위 가짐 → 감면 ○
(담보신탁) 자금조달을 위한 신탁이므로 수탁자는 사업시행자 지위 가지지 않음 → 감면 X
 -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
지방세 감면 적용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
 - (③)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를 받은 감면을 지방세 감면 규모 총량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감면이 가능하도록 정비
 - * (령§2⑧개정) ‘인구감소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’ 추가로 신설하여 예외 규정으로 운영
 - (④) 리츠, 부동산펀드, PFV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
 -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감면분 추징 신설
 - (⑤) 종전에는 인구감소지역등^{*}에 해당하였으나 지역 재지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제외된 지역의 감면을 적용할 때
 - 특정 요건 충족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(취득세, 재산세, 지방소득세) 감면을 적용하도록 특례 신설
- * 인구감소지역, 인구감소관심지역